

2025년도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제도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693호)」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대통령령 제35644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7호)」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1호)」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32호)」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및 제품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8. 12. ~ '25. 8. 1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성공) 판정 통보일 기준

□ 제외대상

-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

- ②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접수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수

- ③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 ④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 8. 11.(월) ~ 9. 10.(수)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구 분	접속 경로
접수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매뉴얼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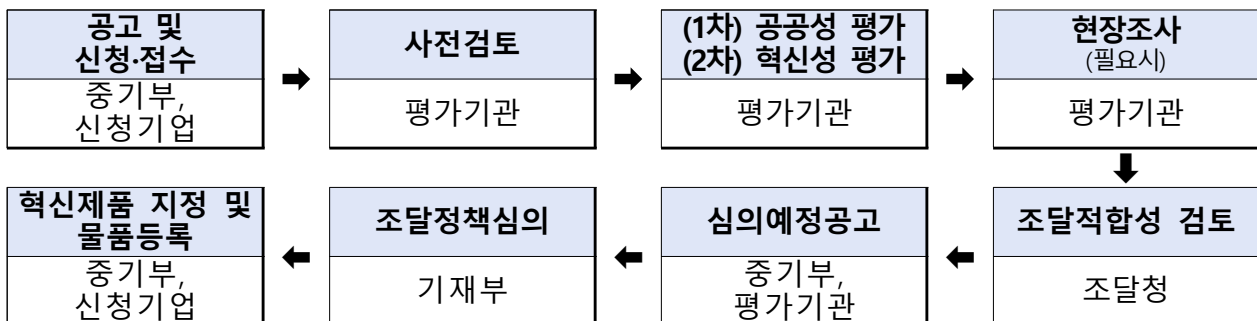
-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됨
- ※ ③, ⑪, ⑫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 ④~⑩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	필수
④	제품 소개서	서식1	필수
⑤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서식2-1	필수 (택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서식2-2	
⑥	생산설비 소개서	서식3	필수
⑦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4	필수
⑧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서식5	필수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⑨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서식6	필수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⑩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서식7	필수
⑪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	해당시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⑫	직접생산 확인서	-	해당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4. 지정 절차

※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지정 절차



*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 및 심의 세부절차

① 사전검토 (9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추가제출 및 보완 불가

② 대면평가 (9~10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실시
- * (1단계)공공성 평가, (2단계)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1단계)공공성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단계)혁신성 평가 실시
- 혁신성 평가의 경우,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제품을 추천

③ 조달적합성 검토 (10~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④ 심의예정 공고 (10~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평가

⑤ 조달정책심의 (12월)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최종 확정

⑥ 지정 및 인증서 발급 ('26년 1월)

- 최종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최초 지정기간 3년)
- * 지정기업은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

< 혁신제품 지정 심사기준 >

[1단계: 공공성 평가]

구분	평가지표	적/부
공공성 평가	1.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2. 현안의 시급성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3. 공공구매 필요성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판단	

* 공공성 평가의 각 평가지표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된 경우 2단계 평가 실시

[2단계: 혁신성 평가]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 혁신성 (50)	1. 제품의 신규성(20)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2. 제품의 탁월성(20)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사용자 편의, 효율성)이 발생하였는지 판단	
	3. 제품의 안전성(10) 의무인증 확보 여부, 제품 사용 중 잠재위험 및 조치방안 등을 판단	
시장성 (50)	4.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20)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및 규모 판단	
	5.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20)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문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6.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경제성(10)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 책정사유, 타당성 등 경제성 확보 여부 검토	
합 계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누리집 : <http://www.mss.go.kr>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